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 및 해외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포함 등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0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가상자산 및 해외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포함 등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 관련 법제도	7
다. 검토의견	12
라. 관계 기관 의견	17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상자산 및 해외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포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4호),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가상자산정보”라 한다)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에 한한다)²⁾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기초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권자·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의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³⁾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와 국세청에 대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정하되 재산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고----- -----.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생략)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상자산에

현행	개정안
<신설> ③·④(생략) 제11조(조사·질문 등) ①(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가상자산정보”라 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에 한한다)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질문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 가. -----신용정보, 보험정보,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

[illegible]

현행	개정안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 관련 법제도

1) 가상자산정보

□ 2020년 3월 법률 제17113호로 개정·공포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었고,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⁴⁾

4)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 이후 2020년 12월 법률 제1775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⁵⁾

2023년 7월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등이 정비되었음.⁶⁾

-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 한편 2026년 2월 대통령령 제36074호로 개정·공포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고,⁷⁾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그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⁸⁾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인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해외금융계좌정보

□ 2010년 12월 법률 제10410호로 개정·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초에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정보를 신고하도록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됨.⁹⁾

8)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

- 한편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징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 검토의견

□ 2026년 현재 가상자산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는 법적·사회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과세당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¹⁾

11)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 등은 그 경제적·재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 결정에 활용될 수 있지 아니한 실정임.

□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이나 과세당국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적 부조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하여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타당한 취지로 생각됨.

- 참고로, 감사원은 2026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¹²⁾

□ 아울러 현행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³⁾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7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고는 있지만,¹⁴⁾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잔액을 포함한 가상자산정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 제1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의 제공을 관계

12) 감사원(2026. 3.), 「감사보고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 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158-171면.

13)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⁵⁾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을 그 신청인으로부터 받고 있지만,¹⁶⁾

현행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에 관한 서면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 동의에 관한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중’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⁷⁾

15)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16)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학비 지급신청서,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의 차상위계층 조사 신청서 및 같은 규칙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신청서(다만, 희망저축계좌 I 지원 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복지급여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지급신청서,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신청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의 신청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신청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의 의료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과세당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정보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하는 ‘현재 시점’의 해외금융계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최신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잔액이
‘5억원 이하’인 해외금융계좌정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건
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집·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국세청’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
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금융기관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¹⁸⁾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
다.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
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
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¹⁹⁾인 ‘국세청’을 다른 민간의 금융회사 등과 같은 범주(금융기관등)로 약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 계좌정보는 각각 현행법 제10조제2항²⁰⁾에 따른 ‘신용정보’와 ‘과세 정보’에 포함되므로 법률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해외금융계좌정보는 이미 과세정보가 연계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어 자료·정보 제공요청기관에 ‘국세청’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가상자산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자료·정보 제공요청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고, 하위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19)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30조(재정경제부)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20)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2027)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을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전 국민에 대한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실제 보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의 경우 전년도에 보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단하는 현재 시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국내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과 해외금융재산의 금액 산정 기준시점이 서로 달라 이중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